공고 제2026 - 500호

2026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(원격) 심사평가 결과 공고

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7조의2, 제12조, 제16조, 제53조, 제59조,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, 제52조, 「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(직업능력심사평가원)가 수행한 2026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(원격) 심사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6일

고용노동부 장관



Ⅰ. 심사평가 결과 안내

1 기관평가 결과 안내

□ 대상 기관

○ 「2026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(원격) 심사평가 계획 공고(2025.12.19.)」에 따른 평가대상 훈련기관*

* 평가대상 기관이 훈련기관평가를 미신청하거나 포기한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인증유예(미흡) 등급 부여

□ 등급 현황

○ 평가대상 285개소 중 226개소 선정, 59개소 인증유예(이하 미흡)

- 등급 및 점수는 고용24 HRD-Net(심사평가시스템)에서 확인

□ 결과확인 경로

○ 고용24 HRD-Net(심사평가시스템)을 통하여 개별 조회 가능

시스템	결과확인 접속경로			
고용24 HRD-Net (심사평가 시스템)	「인증평가」	「평가 최종결과」	「평가 결과조회」	「평가년도/회차」 선택 > **14 [2026년 직업능력개발훈련(원격) 심사평가(인증평가)]** > 검색

※ 현장평가 피드백보고서는 '미흡(인증유예)'이 부여된 훈련기관에 한하여 제공

2 유효기간 안내

□ 원격훈련기관 평가등급

○ 2026년 현장평가에 참여하여 새로운 등급을 획득한 기관의 유효기간은 2027. 1. 1.부터 적용

- 훈련기관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평가를 신청하여 기본평가 및 성과평가 모니터링에 참여해야 하며, 미신청 시 미흡 등급 부여

평가등급		유효기간*
일반3년(3년 인증)		2027. 1. 1. ~ 2029. 12. 31.
신규1년(1년 인증)	➡	2027. 1. 1. ~ 2027. 12. 31.
미흡(인증유예)		2027. 1. 1. ~ 1년인증(신규 1년) 또는 3년인증(일반 3년) 등급 획득 시까지

* 현장평가 미적용 기간

○ 현장평가 비대상 기관은 기본평가 및 훈련성과 모니터링 결과가 적합인 경우 기존 등급 유지, 부적합인 경우 미흡 등급 부여

평가등급		유효기간
일반3년(3년 인증)	➡	해당 등급 유효기간 유지
미흡(인증유예)		2027. 1. 1. ~ 신규(1년) 또는 일반(3년) 등급을 새로 부여받는 날까지

□ 우수훈련기관

○ **(선정)** 현장평가 참여 일반(3년)기관 중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, 유효기간을 2년 우대하여 2027. 1. 1.부터 2031. 12. 31.까지 5년 부여

○ **(선정 취소)** 기 선정 우수훈련기관 중 취소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기본평가 또는 훈련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(3년) 또는 미흡 등급으로 조정

Ⅱ. 이의신청 접수

□ 신청 대상

○ 『2026년도 원격훈련기관 평가』 신청(참여)*한 기관 중 심사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훈련기관

* 2026년도 심사평가 신청기간 내 심사평가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훈련기관 및 평가포기 등으로 역량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훈련기관은 이의신청 접수 불가

구분	신청대상
기본평가	• 기본평가(준법성, 재정건전성 등)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관
역량평가	• 역량평가(현장평가, 훈련성과, 과정인정요건 등)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관

□ 신청 기간: 2026. 11. 6.(금) ~ 11. 13.(금) 18:00

□ 신청 방법

○ **고용24 HRD-Net(심사평가시스템)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***

* 해당 시스템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'이의신청 없음'으로 간주

- 자세한 방법은 [별첨1]의 '이의신청 고용24 HRD-Net 전산 활용 가이드' 참고

회차	시스템	이의신청 경로		
14회차	고용24 HRD-Net (심사평가시스템)	「인증평가」	「기본평가결과」	「기본평가 결과 및 이의신청」
			「역량평가 결과」	「역량평가 결과 및 이의신청」

※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 점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, [별첨2]를 추가 작성하여 전자우편 e-simsa@koreatech.ac.kr 로 제출하여야 함

□ (이의신청 심의 결과 공고) 2026. 12. 18.(금) (예정)

※ 이의신청 심의 결과 공고일은 이의신청 심사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< 참고사항 >

- 심사평가 신청 시 기(旣) 제출한 자료 및 전산 입력사항은 변경(수정·보완)할 수 없음
- 입력오류 등 훈련기관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된 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

Ⅲ. 유의사항

□ 결과 이의신청

○ **(이의신청 심의)**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 '인정' 또는 '불인정' 결정

- 이의신청은 중복 신청(기본평가, 역량평가)이 가능하나,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 미기입 시 심의 대상에서 제외 가능

-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'불인정'으로 확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최초 통보한 결과를 최종 결과로 확정

○ **(이의신청 제외)** 2026년도 심사평가 결과 외 사항*은 이의신청 제외

* 평가포기 기관의 이의신청, 심사평가 문항별 점수 공개 요청, 심사평가위원 정보 공개 요청, 훈련성과 점수 산정 관련 세부 정보, 단순 건의사항 등

○ **(행정 사항)** 훈련기관은 「2026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(원격) 심사평가」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등 제기 가능

□ 결과 조정 및 선정 취소

○ 다음의 경우 「2026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(원격) 심사평가」 결과 통지 이후에도 훈련기관평가 미흡 등급으로 조정 가능

① 거짓·조작된 자료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기관평가 등급을 획득하거나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경우
- 기본평가, 현장평가의 평가자료를 허위 제출한 사실이나 출결 또는 취업률 등 훈련성과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-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위촉된 심사평가위원에게 컨설팅, 자문 등을 받고 심사평가 시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

② 훈련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,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

③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

④ 전과정 위탁·인정 제한 처분 또는 사회적 물의 발생 등으로 정부재정지원사업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○ 우수훈련기관 선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우수훈련기관 선정취소 가능

※ 2026.12.31.까지 우수훈련기관 선정취소에 해당하는 처분 등이 발생할 경우 기 부여한 우대혜택 조정

○ 행정소송·심판이 종결되는 경우, 해당 판결·재결 결과를 기관평가 결과에 즉시 반영할 수 있음

※ 전과정 위탁·인정제한 처분에 따른 미흡 또는 해당직종 위탁·인정제한 처분 등에 따른 우수훈련기관 취소가 집행정지 등으로 보류된 경우 해당 소송·심판 종결 시 즉시 반영

○ **(평가등급 표기)** 「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」 개정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-56호, 2026. 8. 1. 시행)에 따라 용어를 다음과 같이 변경

계획 공고('25. 12. 19.)	결과 공고('26. 11. 6.)
훈련기관 인증평가	훈련기관 평가
인증등급	평가등급
3년인증/1년인증/인증유예	일반(3년)/신규(1년)/미흡

※ 심사평가시스템 또는 KSQA홈페이지 메뉴명은 기존 명칭(인증평가 등)으로 표시될 수 있음

□ 항목별 이의신청 안내

○ **(기본평가)** 이의신청 시 감점 치유를 위한 필요 서류*만 제출

*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, 기업신용등급 보고서 또는 확인서(기업신용평가기관 정보와 기업신용평가등급, 유효기간 여부를 반드시 확인, 공공기관 제출용)는 파일이 한 개이더라도 **반드시 zip파일로 압축**하여 첨부

○ **(현장평가)** 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이 '인정'된 기관에 한하여 본 평가 당시와 동일한 평가방법 및 기준으로 현장 재평가 실시

- 본 평가 당시 제시한 증빙자료 이외의 추가 증빙자료는 제출 불가하며, 본 평가 증빙자료와 대조하여 추후 보완된 사항은 불인정

※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 영역의 미충족 요건에 한해 보완 가능

- 현장 재평가 대상 및 일정 등은 해당 기관 개별 안내*,**

* 심사평가 참여신청서의 '평가담당자정보'(관리자 및 담당자 연락처 등)가 변동된 경우, 반드시 심사평가시스템의 '담당자변경' 메뉴에서 해당 정보 수정 요망. 등록된 연락처 오류로 인한 연락 불가 등의 책임은 기관에 있음.

ㅇ 고용24 HRD-Net 심사평가시스템 > 인증평가 > 평가신청 > 평가신청조회 > '참여승인' > (평가참여신청서) '담당자정보변경' > '담당자변경' 클릭 후 담당자 정보 수정하여 '저장' > (평가참여신청서) 평가담당자정보 변경 확인

** 현장 재평가가 실시될 경우 해당 일정은 1~3일 전 안내하며, 일정 변경 불가

○ **(과정인정요건)**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,

① 고용24 HRD-Net(심사평가시스템)의 이의신청 메뉴에서 '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'을 선택 및 보완 사유 작성 후,

②[별첨2] 서식을 추가로 작성하여 전자우편(e-simsa@koreatech.ac.kr)으로 제출

※ 이의신청 기간 내 ①,②를 모두 신청(제출)해야 함. 그 외 항목(기본평가, 현장평가, 훈련성과 등)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자우편으로 제출 시 접수 및 반영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고용24 HRD-Net(심사평가시스템)을 통해 작성·신청

Ⅳ. 문의처

문의 내용	구분	문의처 및 문의 방법		
이의신청 문의	직업능력 심사평가원	직업능력심사평가원 스마트과정심사센터	누리집	https://www.ksqa.or.kr/ → 국민소통 → Q&A → 원격훈련인증평가
			유선	02-6943-4030
시스템 문의	고용24 HRD-Net (심사평가 시스템)	한국고용정보원	누리집	https://www.work24.go.kr → 고객센터 → 문의하기
			유선	1577-7114